

# 연구실 안전환경조성 규정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시설·설비의 안전환경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·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연구실”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·장비·연구실험실·연구재료 등 교육 연구시설을 말한다.
2. “연구활동종사자”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직원·연구원·조교·대학원생·학부생 등을 말한다.
3. “안전점검”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및 점검기구 등에 의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.
4. “정밀안전진단”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 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 및 평가를 말한다.
5. “부서장”이라 함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속한 단과대학 또는 부속기관의 장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교에 설치한 연구실에 적용한다. 단, 동산의료원 연구실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.

## 제2장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

**제4조(위원회 설치)** 연구실 안전환경에 관한 정책결정과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‘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’를 둔다.(개정 2010. 12. 6.)

**제5조(위원회 구성 및 심의)** ① 위원회는 경영부총장, 교무처장, 관리처장, 연구처장, 자연과학대학장, 환경대학장, 공과대학장, 건축학대학장, 미술대학장, 패션대학장 등 당연직위원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15명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10. 12. 6, 2012. 4. 10, 2012. 8. 1.)

② 위원장은 경영부총장이 되고,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(개정 2012. 4. 10, 2012. 8. 1.)

③ 부위원장은 자연과학대학장이 되고,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실 안전환경 계획의 수립
2. 안전환경 기반시설
3. 연구실 사고 발생시 조사 및 조치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**제6조(사고대책위원회 구성)** 위원장은 사고 발생시 위원회를 사고대책위원회로 전환하여

사고의 원인 및 책임소재 등 제반사항을 조사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한다.

### 제3장 총괄부서 안전환경 조성

**제7조(총괄부서의 임무)** 연구실의 안전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리처 자원관리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.(개정 2012. 8. 1.)

1. 안전환경 조성 조직
2. 연구실 현황 파악 및 관리
3. 안전환경 점검 및 교육
4.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
5. 건강검진 및 보험관리
6. 안전환경 조성 예산확보
7. 위원회 관련 업무
8. 기타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업무

**제8조(안전환경 점검)** ① 위원장은 안전환경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정기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특별안전점검은 위원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, 자체 또는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④ 유해·위험물질 및 시설·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### 제4장 부서별 안전환경 조성

**제9조(부서장의 임무)** ① 부서장은 연구실의 안전환경조성에 대한 책임자로서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.

- ② 부서장은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환경 정책과 안전환경점검 및 교육·훈련 체계를 구축,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부서별 위원회는 소속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서장이 된다.

**제10조(심의)** 부서별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실별 안전관리책임자 선정
2. 안전환경 점검 및 교육
3. 안전환경 조성 시설과 설비 관리
4. 사고 발생시 경위조사 및 사후대책 수립
5. 기타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

**제11조(안전관리책임자)**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야 한다.

-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실험 시작전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할 내용과 기기의 취급, 조작요령 및 사고 발생시 대피요령 등을 숙지시켜야 한다.
-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.
  1. 개인보호구, 환기시설 등 실험에 필요한 보호장비 제공
  2. 연구실 안전환경수칙 부착 및 숙지
- ④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연구실은

안전조치 후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연구활동종사자)** 연구활동종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구실 안전환경교육 수료 및 안전환경수칙 준수
2. 연구실 안전환경 일상점검을 매일 실시
3. 안전환경에 관련된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

**제13조(안전환경교육)** ① 부서장은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안전환경교육은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안전분야에 관한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안전환경 교육대상자는 연구활동종사자로 한다.

④ 소속부서에서는 안전환경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.

1.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매 학기초 안전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2. 정기교육을 연2회(12시간)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3.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는 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·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⑤ 안전환경 교육내용은 유해물질, 소방, 전기, 가스, 응급처치, 보호장비사용 등으로 하되 세부교육 내용은 따로 정한다.

**제14조(안전환경교육 평가)** ① 안전환경교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부서장은 안전환경교육 미이수자에게 교육을 참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미 수료자에게는 실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.

**제15조(유해물질 취급자)** ① 유해물질 취급종사자는 연구실 이용에 따른 사고예방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② 실험폐액이 발생하는 연구실에서는 배출시설 운영일지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방화, 전기, 가스 안전관리)** 연구활동종사자는 방화, 전기, 가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사고조사 및 조치

**제17조(사고조사)** ① 안전환경 조성 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사고 발생시 소속부서장에게 안전사고의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② 사고 발생시 부서장은 사고 경위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사고조치)** ① 위원회에서는 안전사고 발생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.

1. 경미한 경우: 시정조치의뢰, 경고, 주의, 교육 및 훈련, 경위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2. 중대한 경우: 경위서 제출, 연구실 사용제한 및 폐쇄 등을 결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사고조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, 그 결과를 부서장에게 서면 통보한다.

**제19조(연구실 사용제한)** ① 소속부서장은 안전환경점검 실시 결과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 및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 부서장은 그 사실을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6장 보험가입

**제20조(보험가입)** 부서장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.

**제21조(준용)**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『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』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.

## 부 칙

1. 이 규정은 200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『환경안전관리규정』은 폐지하며, 동 규정에 의해 수행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2.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